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13-01



디자인보호법 일반

시행령/심사기준(4·5부)





목 차

contents

■ 디자인보호법	1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81
■ 디자인 심사기준	93
•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95
•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77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

- 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시행일 : 2021. 10. 21.] 제2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

- 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부터 출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39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

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

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 3. 2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3조(출원공개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 본다.
-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

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예외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2. 18.] 제86조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 2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 27., 2021. 8. 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시행일 : 2022. 2. 18.] 제87조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

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08조(질권)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26조(심판청구방식)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

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 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1. 11. 18.] 제146조의2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1. 11. 18.] 제152조의2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밝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 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적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보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

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

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x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iv)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v)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

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식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7.>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시행일 : 2021. 11. 18.] 제207조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1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사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

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

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 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72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 3. 30, 일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4. 2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9.>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 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 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1577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4부 · 제5부 포함)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장 성립요건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디자인의 정의

- 1)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및 글자체이다.
- 3)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일반적 성립요건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① 부동산. 다만, 반복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㉓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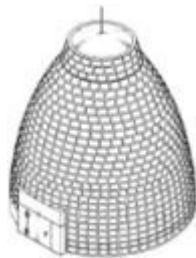
(예)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대법원 2007후4311 판결 참고)

[물품명] 한증막

[디자인의 설명] ㉑ 재질은 석재와 황토임

㉒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고,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됨.

㉓ 본 물품은 중량체이므로 저면도는 생략함.



㉔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 화장실, 조립가옥 등

②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및 전파 등

③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다만,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④ 합성물의 구성각편. 합성물이란 장기짜, 트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등과 같이 수 개의 구성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성이 결여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⑤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등

⑥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하여 변형한 “스카프”

(2) 디자인의 형태성

「형상·모양·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①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 ②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 ㉠ 「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한다.
 - ㉡ 「색구분」이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 「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3)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① 시각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 ②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하나의 단위
- ③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 ④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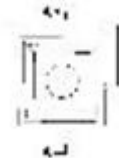
(예)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 ㉡ 평면도에서 한 변의 길이는 0.4mm임.



【도면 1.1】



【도면 1.2】

“발광다이오드”

(4)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①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 ②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부분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 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 ① 독립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 ②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일 것
- (2)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 ①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 ②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 (3)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 (4)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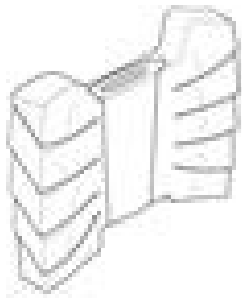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1)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93후1247 판결 참고).

- (2)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 (3)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예)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복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갈비”

- (4) 부분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
 - ①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 ②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2)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예)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2)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예) 그림, 유리공예작품, 도자기작품, 설치미술작품

(3)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디자인

2.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도면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물품의 뒷면부분에서 바라본 도면(배면사시도) 및 아랫면 부분에서 바라본 도면(저면사시도)을 포함한다]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추측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2)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사용상태·재질 또는 크기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 상호간 불일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4후2123 판결 참고)

4) 도면(도면대용으로 제출하는 사진을 포함한다),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디자인의 표현 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볼 때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여 당업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면, 견본 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불선명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음영, 타 물품의 영상 등이 찍혀서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5)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출원서 또는 도면 중에 문자나 부호 등을 사용하여 형상, 모양 및 색채를 추상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디자인의 요지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6) 재질 또는 크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규칙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참고}

7)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무착색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아래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다.

(1) 백색, 회색 또는 흑색이라고 색채를 적은 것

(2) 투명 부분이라고 적은 것

(3) 뚫린 부분이라고 적은 것

8) 도면 내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점·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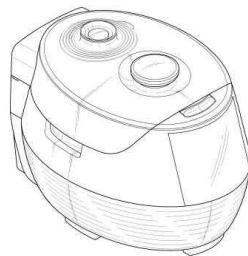
(1) 불인정되는 예

도면 내에 도형 안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

(2) 인정되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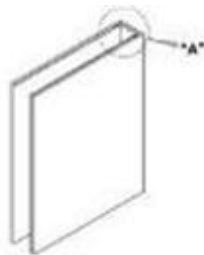
도면(3D 모델링 도면을 포함하며 제출된 모든 도면을 말한다)에 평면, 굴곡, 오목 및 볼록 등을 음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1) 도면 내에 음영을 표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도면 내에 표현된 세선은 곡면 및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음영선임’이라 적은 것



“전기압력보온밥솥”

(예 2) 도면 내 도형 안에 확대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앨범용 바인더”

[심사관 참고] 음영선의 표현

다음의 경우에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음영선으로 판단할 수 있음.

- i)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선보다 가는선(細線)을 겹쳐 사용한 경우
- ii) 형상 또는 모양선과 연결되지 않은 가는선을 사용한 경우

9)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①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 ②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

(2)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 ①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 ②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

(예) 문자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인증마크가 표시된 “포장지”



- 10) 도면만으로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11) 도면에서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란에 정확히 적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부 도면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참고} 이 경우 평면적인 물품을 표현하여 뒷면부분의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부분은 모양 없음”이라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일부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와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방법

구분	제출도면	기재방법
(1) 앞면부분과 뒷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앞면부분 또는 뒷면부분	“뒷면부분은 앞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앞면부분은 뒷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2) 왼쪽면부분과 오른쪽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왼쪽면부분 또는 오른쪽면부분	“오른쪽면부분은 왼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왼쪽면부분은 오른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3) 윗면부분과 아랫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윗면부분 또는 아랫면부분	“아랫면부분은 윗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윗면부분은 아랫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4) (1), (2), (3) 외에 도면 중 같은 부분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부분들 중 한개의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5)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 부분을 볼 수 없는 경우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6)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디자인이 도시되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12)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제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규칙 [별지 제4호 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요령 참고)

(1)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또는 사용상태도 등이 없는 경우

※ 단면도 등의 도면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되 해당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하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판단한다.

구 분		비 고
도면	(절단부)단면도	아래 13)에 따라 작성
	(부분)확대도	아래 14)에 따라 작성
	분해사시도	사용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제외함
참고도면	사용상태도	그 밖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2) 조립완구 등과 같은 합성물의 경우에

①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보관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이 없는 경우

② 조립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이 없는 경우

(3) 열리고 닫히거나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변화하기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예) “탁자가 부설된 의자”의 펼쳐진 상태의 도면 및 접힌 상태의 도면



[도면A 1.1]



[도면B 1.1]

- (4)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예) “로봇완구”의 형태가 변화하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



[도면A 1.1]



[도면B 1.1]



[도면C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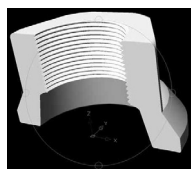


[도면D 1.1]

13)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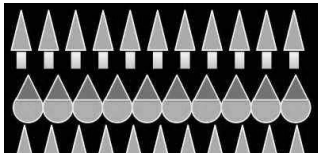
- (1) 절단면에 평행사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의 절단면의 표현이 불완전하게 표시되었거나 표시가 없는 것

3D 혹은 사진 도면의 인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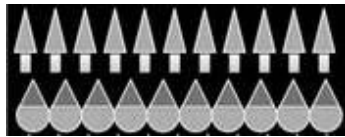
- (2) 절단된 부분을 원래의 도면에서 쇄선 등으로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일정한 도면을 지정하고 그 도면의 중앙종단면도 또는 중앙횡단면도라고 적은 것은 예외로 한다.
- 14)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확대한 부분을 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확대한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도면에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5)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구성물품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 16)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되지 않은 경우 다만,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더라도「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단위모양의 결합 및 배열)상태를 기재하였고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이 일치하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 “직물지” 디자인의 도면에서 모양이 상·하 및(또는) 좌·우로 연속·반복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시

올바르지 않은 도시



올바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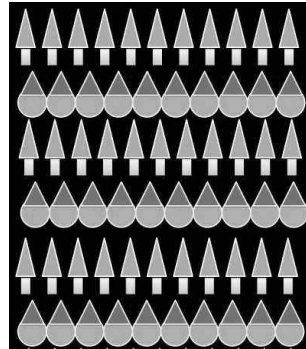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상태를 기재하였으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예시〉



(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출원된 도면을 단위모양으로 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반복되는 것임



(2)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디자인 설명란 기재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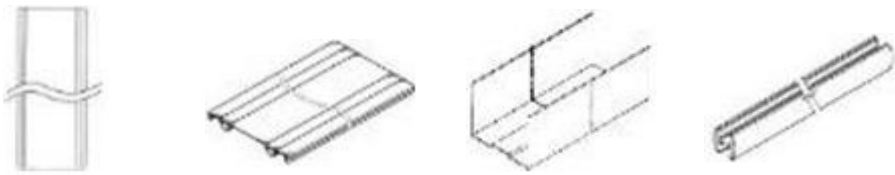
구 분	기재방법(예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평면 디자인	“본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방향으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또는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상하는 전폭임”
형상이 연속하는 입체디자인	“본 디자인은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는 것임” 또는 “본 디자인은 좌우로 연속되는 것임”

※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이를 설명란에 기재할 수 있음

17)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생략한 부분을 두 줄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하여 표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는 도면

(예) 두 줄의 굵은 곡선, 2점쇄선 및 지그재그선 등으로 절단하여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면상 몇 mm 또는 몇 cm 생략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선, 끈, 줄 등과 같이 물품의 구성주체가 아닌 부수적인 구성물의 길이를 도면상 생략하는 경우에는 도면상 생략한 길이를 적지 않아도 된다.

18)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한 쪽의 형태만을 도시하고 나머지 쪽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아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블루투스 이어폰의 도면에 한 쪽 이어폰의 형태만이 도시되어 있고, 다른 쪽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19)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20)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이 다음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것

- (1) 외주면에 색채가 없고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는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예)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경”



“발광다이오드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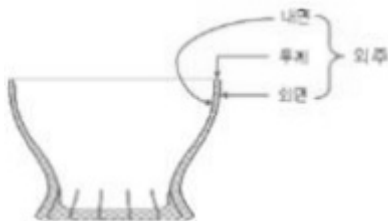


“손목시계 본체”



- (2) 외주의 외면·내면·두께 속의 어느 한 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외에, 모양 또는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뒷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앞면, 밀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윗면 또는 모양부분의 전개도 등)을 첨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한다.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예) 모양이 들어있는 컵이나 병 등



- (3) 외주의 외면·내면·두께 속이나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외에,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각 면별(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로 도시한 도면을 첨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한다.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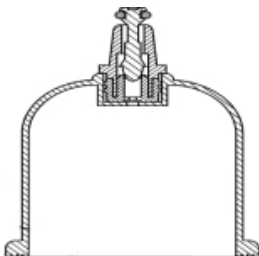
(예) 외주의 외면과 내면에 모양이 있는 컵 등

- (4) 투명입체로써 그 일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를 표현(다른 면에서 투명되어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한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한다.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예) 문진 등

- (5) 투명한 부분의 두께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투명부분의 두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하며, 절단된 부분은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두께를 표현한 단면도



21) 부분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 ①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표현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예) 채색(coloring) 또는 경계선(boundary) 등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트랙터”



“운동화”



“운동화”



- ②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 ③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를 1점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2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 (2)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 (3)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한 경우

23) 3D 모델링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3D 모델링 도면이 셰이딩 상태가 아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모델링되었거나 3차원의 돌려보기 상태가 아닌 2차원상태로 도면이 표현된 경우
- (2) 3D 모델링 도면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도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3) 3D 모델링 도면을 실행하였을 경우 도면에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4) 투명부가 있는 물품의 도면에서 그 투명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투명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24)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거나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등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표현하는 도면이 선도(線圖),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분디자인의 표현을 위해 선도와 사진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5) 3D 모델링 도면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도면을,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일련번호의 디자인을 3D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6) ‘디자인의 설명’에 디자인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기재하면서, 해당물품의 혼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기재하는 경우
- (예) “자동차”로 출원하면서 디자인의 설명란에 ‘본원 디자인은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 가능함’으로 기재한 경우

제3장 신규성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

34조,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규성의 요건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디자인의 신규성 요건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2)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

3) 한 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별 전체로서만 신규성 요건을 판단한다.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등록 전에 신규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를 근거로 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신규성이 상실되는 구체적인 유형

유형	공지디자인 (A, a를 포함하는 A)	출원디자인 (A, A', a, a')
1	완성품 (A)	완성품 (A, A')
2	부품 (A)	부품 (A, A')
3	한 벌의 물품 (A)	한 벌의 물품 (A, A')
4	부분디자인 (A)	부분디자인 (A, A')
5	완성품 (a를 포함하는 A)	부품 (a, a')
6	완성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7	부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8	한 벌의 물품 (a를 포함하는 A)	구성물품 (a, a')
9	부분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 A디자인 또는 a를 포함하는 A디자인이 출원공개, 설정등록 또는 공지된 이후 출원된 출원디자인 A, A', a, a'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 $A=A, A \approx A', A > a, a \approx a'$ 의 관계임.

2.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1)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1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된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 (2) 디자인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고 시·분·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3) 등록디자인은 그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전까지는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은 그 국제등록된 디자인이 공고된 날 공지된 것으로 보며,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공지기관에 의하여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공지일을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그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 디자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날을 공지일로 본다. 등록된 비밀디자인은 비밀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디자인은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본다.
 - (5)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을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한(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경우에 그 선출원 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 2)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2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① 간행물이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쇄·복제수단에 의하여 제작되어 반포된 문서, 도화 및 사진 등을 말한다. (대법원 92후377 판결 참고)

(예) 공보,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팸플릿, CD-ROM, 마이크로필름

- ②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 ③ 간행물에 게재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94후1206 판결 참고)
 - ④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개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9후2020 판결 참고)
 - ⑤ 카탈로그의 경우에 일단 제작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포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8후1884 판결 참고)
 - ⑥ 간행물의 반포시기 추정
 - ㉠ 발행년도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
 - ㉡ 발행년월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
 - ⑦ 선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 그 선출원은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①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으로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전송로를 의미한다.

(예) 인터넷, 쌍방향 전송 케이블텔레비전
 - ②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예) 인터넷에 링크가 개설되고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공중이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대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 1)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디자인이 최초에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그 출원디자인의 심사에 있어 그 공지디자인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신규성 상실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만약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지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면, 양 디자인이 비유사한 경우[출원디자인은 $A(a+b)$, 공지디자인은 $a \cdot b$]에는 그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원디자인이 그 공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으로 거절되는 모순이 생긴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요건

1)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1)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하여야 한다.
- (2)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의 출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대상

- (1)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 (2)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 ※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 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 (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 (4)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 (5) 디자인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3)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시기 및 절차

- (1) 출원할 때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여야 한다. 즉, 출원서에 '신규성 주장' 항목을 만들어 디자인의 공지형태 및 공지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 (2) 출원 중에는 보정서를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하거나 그 공지디자인을 거절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주장 할 수 있다.
- (3) 그 공지디자인을 신청이유로 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 (4) 그 공지디자인을 청구이유로 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답변서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 (5)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지에 대하여 주장하면 충분하다(특허법원 2008허3407 판결 참고).

[심사관 참고]

출원인이 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통해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디자인심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이후 절차는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한 때와 같음

4)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1) 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 ①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명서류에는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및 디자인도면 등 객관적인 증거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해당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공지 이후 그 권리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서류에 명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정서(의견서 포함) 등을 통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 1) 다음의 예와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 공지주체, 공지형태, 공지디자인 도면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디자인이 공지 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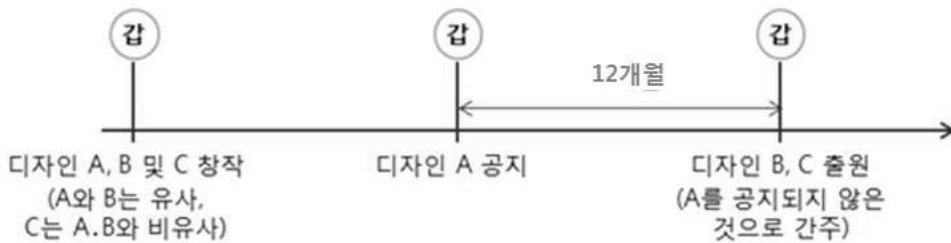
- 2)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당연히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4)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을 출원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및 용이창작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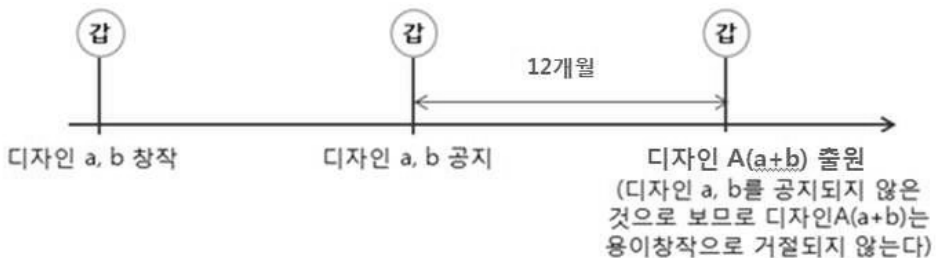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의 효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면 그 공지디자인은 자기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및 제2항(용이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다

(예1)



(예2)



제5장 확대된 선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

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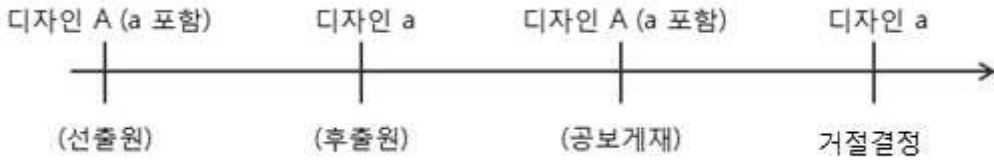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

- 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 확대된 선출원의 요건

- 1)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면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같은지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선출원 디자인 중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후출원 디자인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2) 선출원 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 (3) 선출원 디자인이 후출원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된 출원의 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등록공고가 된 경우

(예)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지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의해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완성품	부품
2	완성품	부분디자인
3	부품	부분디자인
4	한 벌의 물품	구성물품
5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되거나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결정되어 출원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된 후출원 디자인(a, a')은 확대된 선출원으로 거절결정한다.

※ A > a, a ≐ a'의 관계임

2. 확대된 선출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 선출원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은 출원 및 보정 시 제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기초로 한다.

- (1)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
 -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디자인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 (3) 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를 표현하는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등
- 2)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디자인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법 제56조(거절 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를 포함한다]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등록공보의 발행일에 출원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공보의 발행시간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이 분명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다.
-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을 적용할 때에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전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 통지를 하되,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통지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한다.

(예) 선출원이 공개 등이 되지 않아 심사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서인 관계로 자료 첨부가 불가하오
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
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위 3)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후에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 5)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출원공개 또는 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공보게재 전에 무효·취하·포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등록결정이 있는 후 법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제6장 용이창작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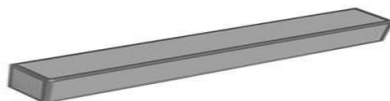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1)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 공지디자인의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 등과 같은 단순모방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중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즉, 다음의 ‘2. 1) (2) ④’에 의한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한다.
-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5)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기본적 형상·모양 등에 의해 물품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예) 용이창작으로 보지 않아 등록된 ‘손거울’



2.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1)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이창작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①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 등을 말한다.

(예)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이하 “당 업계”라 한다)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예)

- ㉠ 주지의 사각형 천정판 측면에 경사면을 표현한 정도의 것
- ㉡ 주지의 난형(卵形)을 뚜껑과 몸체로 분리하여 과자용기를 만드는 것
- ㉢ 유명캐릭터에 손과 발, 몸통을 약간 변형하여 인형으로 만드는 것

(상업적 변형의 예)

주지의 캐릭터
(디자인이 아님)



출원디자인



“인형”

출원디자인



“걸이용 인형”

- ④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 ⑤ 원칙적으로 공지디자인이나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하나의 공지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8후2800 판결 참고)

공지디자인



“전력계함”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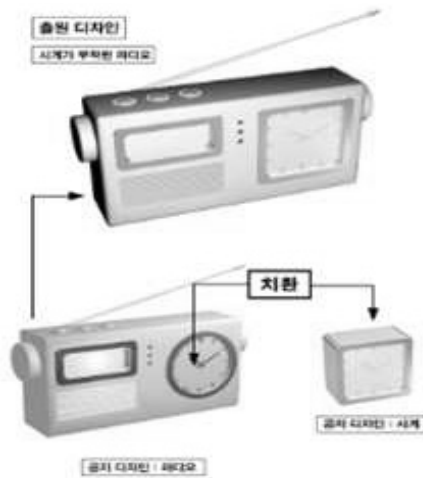
“전력계 박스”

(2) 용이창작의 유형

①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다만,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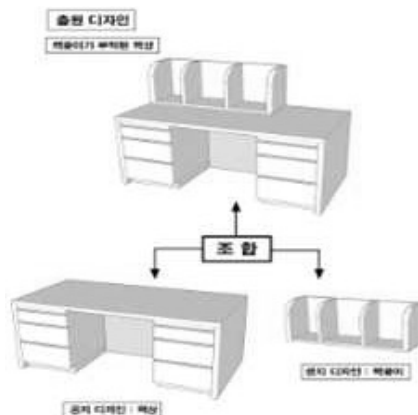
㉞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용이창작

(예) 공지의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의 시계부분을 단순히 다른 시계의 형상 등으로 치환한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㉟ 복수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용이창작

(예) 공지의 책상 형상에 공지의 책꽂이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진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



②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용이창작

(예)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전화기”



③ 디자인의 구성요소 비율의 변경이나 구성단위 수의 증감에 의한 용이창작

(예) 공지디자인의 구성단위 수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벤치”



④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 주지의 형상 등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㉞ 평면적 형상의 예



㉔ 입체적 형상의 예

㉕ 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육각기둥



매화형기둥



한 쌍의 원기둥



원기둥

㉖ 통



육각통



사각통



매화형통



한 쌍의 원통



삼각통



원통

㉗ 홈



육각통 홈



간막이형의 사각통 홈



삼각통 홈



원통 홈



사각통 홈

㉔ 뿔



삼각뿔



사각뿔



원뿔



육각뿔

㉕ 뿔대



삼각뿔대



사각뿔대



육각뿔대



원뿔대

㉖ 뿔대통



삼각뿔대통



사각뿔대통



육각뿔대통



원뿔대통

㉗ 정다면체



삼각형 정다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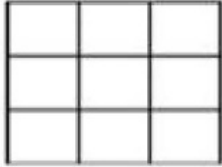
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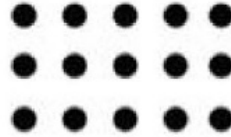
반원기둥

㉔ 주지의 모양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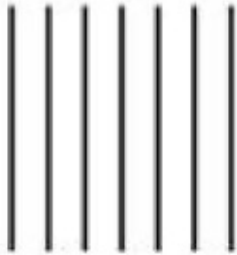
모눈패턴(g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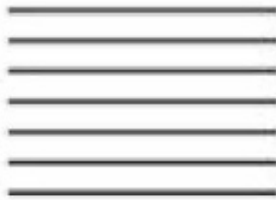
도트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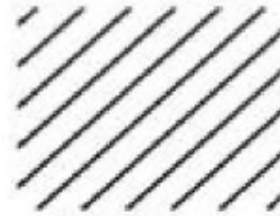
스트라이프(세로)



스트라이프(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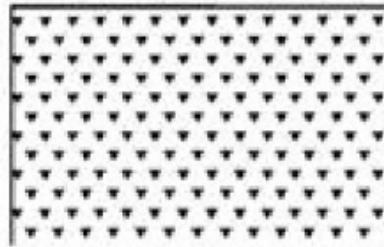
스트라이프(사선)



모자이크패턴



삼각형패턴



도비패턴



- ㉔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
- ㉕ 흔한 모양의 예: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끈무늬 등
- ㉖ 색채: 색채가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칠하여 진 것은 창작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㉗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또는 이들의 결합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지배적 특징들의 결합으로서 창작성이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 ㉘ 자연물: 새, 물고기, 소, 대나무잎, 꽃잎, 소나무, 나무결, 돌, 바위 등
 ※ 자연물이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것은 「주지」가 아니다.
 (예) 꽃잎,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사진 등
- ㉙ 저작물: 김홍도의 풍속도, 만화 주인공 “뽀빠이” 등 널리 알려진 그림, 조각, 만화, 영화 등
 (예) 디자인의 모티브가 유명캐릭터와 유사한 경우 등
- ㉚ 건조물: 남대문,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올림픽주경기장 등 널리 알려진 건조물
- ㉛ 경치: 백두산천지, 금강산,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한 경치
- ㉜ 운동경기 또는 각종 행사장면: 삼일절 행사장면, 올림픽경기 개최장면, 축구경기, 배구경기 등 각종 경기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건조물이나 경치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주지」가 아니다.
- ㉝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㉞ 당 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주지디자인」으로 본다.

- ㉠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완구나 장치물로 전용하는 것 등
- ㉡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ET 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으로 전용하는 것 등
- ㉢ 물품의 형상과 문자로 구성된 디자인에 있어서 형상 및 문자부분이 결합된 전체로서 창작성이 없는 경우
(예) 고딕체로 거의 그대로 쓰여진 ‘ET’를 직사각형 형상의 “스티커”로 디자인한 것 등
- ⑤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에도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예) 공지디자인과 주지의 형상·모양 등의 결합으로 용이창작인 경우
(대법원2008후491 판결 참고)



(3) 용이창작에 대한 증거의 제시

- ①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지·공용의 디자인이 게재된 간행물의 서지사항·디자인 또는 해당 디자인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주소·화면 등을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하여 해당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명백한 주지의 형상·모양 등 또는 주지의 디자인을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4) 당업자에게 있어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대한 증거의 제시

원칙적으로 당업자에게 있어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를 출원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상·모양 등에 의해 물품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행해지는 형태의 구성이고, 당업자에게 있어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는 사실이 심사관에게 있어서 현저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완구업체에 있어서 실제 자동차를 전부 그대로 자동차 장난감으로 전용하는 방법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2)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이나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고, 공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도 한 경우에는 법 제 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한다.

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공지디자인은 용이창작의 판단근거로 하지 않는다.

※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 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 전화기의 본체 및 수화기의 디자인이 각각 먼저 공지된 이후 이들을 결합한 전화기의 디자인이 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된 경우



공지디자인



공지디자인



출원디자인

제7장 선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

- 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 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1. 선출원의 요건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디자인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에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출원인[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디자인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지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의해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4)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3	한 벌의 물품	한 벌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A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후출원 A, A'디자인은 A디자인이 설정등록되거나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출원 규정을 적용한다.

※ $A=A$, $A \simeq A'$ 의 관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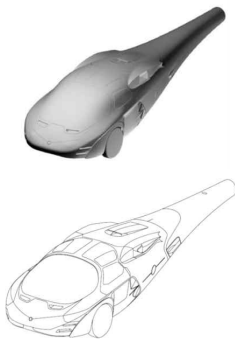
2.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출원

- 1)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선출원
- 2)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에 의해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선출원
- 3) 2007년 6월 30일 이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선출원

3. 선출원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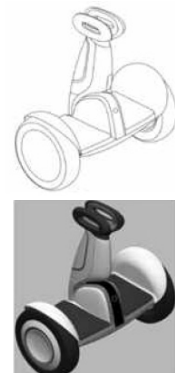
- 1) 사진과 선도의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는 2개 이상의 출원의 동일·유사 판단에서, 사진도면이 카메라 각도에 따른 음영만 나타낼 뿐 선도면과 표현이 동일한 경우 양디자인은 동일로 판단하며(예1), 무채색을 색구분으로써 나타낸 경우는 상호간 유사로 판단한다 (예2).

(예1) 동일로 인정:
(모델링↔선도면)



(예2) 유사로 인정:

흑백도면에 색상·명암 표현의 추가
“칫솔” (렌더링↔선도면) “밸런스 스쿠터” (선도면↔렌더링)



- (1)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전이나,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예) 설정등록이나, 협의불성립에 의한 거절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 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경우에 그 선출원 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미공고)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처리한다.

(2) 위 (1)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이 되거나, 협의불성립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선출원 디자인이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포기,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 이유통지를 한다.

(3)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을 적용한다.

- (4) 선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 그 선출원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2호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5)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는 후 법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2항에 따른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 (6) 선출원에 의한 등록디자인이 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른 무효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와 함께 심사보류통지를 한 다음 무효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 (7)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다만,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같은 날 출원)을 적용할 때에
- (1)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타인이 출원한 경우
- ① 특허청장 명의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협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한 후 협의에 따라 정해진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고 나머지 출원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② 출원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③ 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④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협의결과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2) 둘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 ①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②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③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선택결과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3)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 ①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②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③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선택결과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④ 다만,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제8장 관련디자인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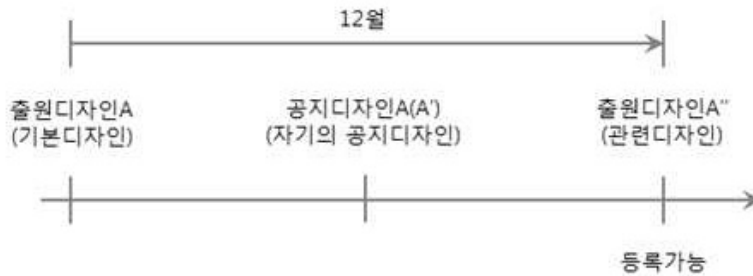
1. 관련디자인의 정의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동일자 출원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 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에 기본디자인의 디자

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예)



3)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이란 다음의 경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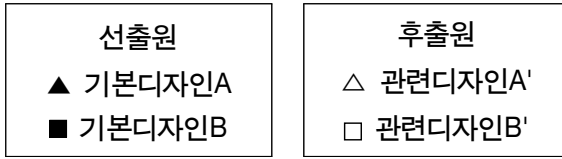
(예)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유형	기본디자인(A)	관련디자인(A')
	등록	후출원
	선출원	후출원
	동일자 출원	동일자 출원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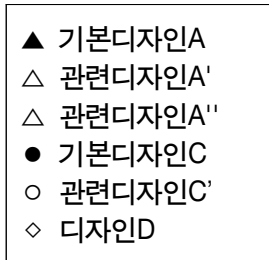
※ 등록된 A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A≍A'의 관계임).

※ 선출원된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또는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할 수 있다.

i) 선출원된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ii)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물품이다.

2. 관련디자인의 요건

- 1)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출원된 것이라면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 2) 기본디자인이 2014년 6월 30일 이전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인 경우에, 관련 디자인이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것이라면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 3)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2항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다.
- 4) 관련디자인출원으로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3. 관련디자인 요건의 구체적 적용방법

- 1)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 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한다.
 -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 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 2)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 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3항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다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대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적용요건

- 1) 국기, 국장(國章), 군기,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또는 이들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1호를 적용한다.
 - (1) 여기서 말하는 「표장」은 공공기관 등의 주된 마크(심벌)를 말하고, 「문자」나 「표지」는 국제기관 등의 명칭(로고타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하 “공익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자기의 표장, 또는 문자나 표지를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 또는 자기의 공익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출원하거나 자기의 공익표장을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타인이 공공기관의 표장, 국제기관의 문자나 표지 또는 공익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출원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하여진 변화로 인해 국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태극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물품의 예



“티셔츠”



“모자”

(5) 국가는 국제기관 등이 아니므로 국가의 명칭은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2호를 적용한다.

(1)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3)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4)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5) 저명한 타인의 초상.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저명’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널리 알려진 연예인, 스포츠선수 또는 국내외 유명인사 등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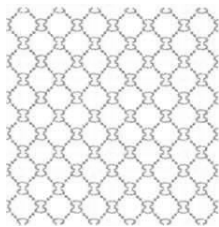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3호를 적용한다.

(1)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 1)

출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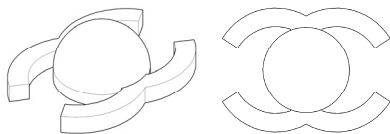


타인의 저명한 입체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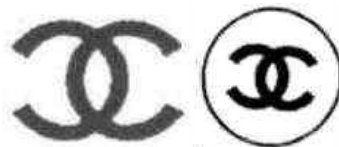


(예 2)

출원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



(2)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상표적인 성격을 갖춘 타인의 저명한 디자인(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포함한다)을 일부 구성요소로 하는 것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인증에 관한 정보전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4호를 적용한다.

(1)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다수 존재한다면 기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필연적인 형상 이외에 고려해야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2)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단,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

※ 「표준화된 규격」이라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한국산업표준(KS), 국제 표준화기구의 ISO규격 등 법률과 공적인 표준화 기관에 의해 확정된 ‘공적인 표준 규격’과 공적인 규격은 아니나 그 규격이 당해 물품분야에 있어서 업계 표준으로서 인지되고 있고, 당해 표준 규격에 기초한 제품이 그 물품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규격으로서의 명칭, 번호 등에 따라 표준이 되어 있는 형상, 척도 등의 상세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규격’을 말한다.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 1)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출원 디자인의 전체뿐만 아니라 1부분, 1부품 또는 1구성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4호는 출원디자인의 전체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3)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부분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등록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
- 4)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도면은 원칙적으로 참고도면을 포함하여 판단대상으로 한다.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 1)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 2)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물품 유사여부의 일반적 기준

1)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을 말하며, 「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작용 등을 말한다.

2)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 “볼펜”과 “만년필”

3)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후2570 판결 참고).

※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수저통”과 “연필통”

2. 물품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1)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른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 「부품」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전거 핸들”

※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전거 반사경”

(2)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위의 (1)에도 불구하고 양 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① “사진틀”과 “사진틀 테”

② “손목시계”와 “손목시계 본체”

③ “안경”과 “안경테”

2) 형틀과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 “빵틀”과 “빵”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98후492판결 참고).
- 2)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①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 ②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본다.
- ③ 상식적인 범위에서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④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 ⑤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3) 디자인의 유사범위의 폭 설정방법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 새로운 물품
 - ㉡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예) 칼, 식기, 포장용 용기 등
 -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예) 젓가락, 편지지 등
 -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예) 자전거, 쌍안경, 운동화, 자동차용 부품 등
 - ㉣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예) 신사복, 한복 등

2)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 ②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③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후3307 판결 참고).
 - ④ 공지의 형상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7후4830 판결 참고).
 - 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대법원 2003후762 판결 참고).

(2)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예) ①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전체 중 앞면 부분에 비중을 둔다.

② 세탁기 등은 전체 중 아랫면 부분에 비중을 적게 둔다.

③ 물품의 구매 시 일반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사여부 판단시 비중을 높게 둔다.

(3)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대법원 2003후1666 판결 참고).

(예) 수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형태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3)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간 유사여부 판단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간에는 형태변화의 전후 또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다23739 판결 참고).

(2)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 유사여부 판단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4)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한다.
- (4)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의 디자인은 그 완성품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아 법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한다.

(예) ㉠ “자전거”와 “자전거 핸들”

㉡ “가방”과 “가방지”

5) 합성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합성물이란 수 개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된다.

(예) 장기짱,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 (2) 합성물의 디자인은 구성각편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대비 판단한다.
- (3)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립완구와 구성각편의 유사여부 판단은 위 완성품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6)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②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③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 ④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2) 상기 ① 내지 ④에 대하여 하나라도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전부가 동일한 경우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고 하는 부분 이외의 형상 또는 이에 포함된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에만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본다.

7)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한 별의 물품 전체로서 판단한다.